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7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30.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건강증진과)
- 제출일자: 2020. 10. 15.
- 회부일자: 2020. 10. 16.
- 검토기간: 2020. 10. 19. ~ 2020. 10. 26.

2. 개정이유

- 우리 구 합계출산율(0.89명, 2019년) 및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첫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용품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지원내용에 육아용품지원을 추가함에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호, 제7호)
- 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내용 신설(안 제4조제2호)
- 다. 육아용품 지원대상 신설(안 제5조제2항)
- 라. 육아용품 지원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마. 육아용품 지원방법 신설(안 제8조)
- 바. 육아용품 지원대장등 비치 및 관리 관련 규정 추가(안 제10조)

4. 검토의견

-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의 복지예산 증가 및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 이에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릴 것 없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정책 방식으로는 지원된 예산 규모 대비 그 정책 효과는 보잘 것 없다는 평가가 팽배.
- 동 개정안 및 현행 달서구 조례에 규정된 달서구의 출산지원(장려) 정책들이 투입 예산 규모 대비 그 정책효과는 어느 수준인지,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별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 내용 포함, 달서구의 현행 출산 장려 정책 내용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하려는 출산 장려 정책은 첫째(둘째 이상은 제외)를 출산한 가정에게 20만원내의 육아용품을 지원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6조제2항)하고자 함.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달서구의 출산 장려 지원 내용은 표와 같음.

조례 명	지원 항목	지원 대상 및 규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출산축하금 등에 관한 조례	출산축하금 ¹⁾			100만	200만	500만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입학준비금 ²⁾		20만	20만	20만
		육아용품	20만			

-
- 1)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4조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에게 각각 지원하는 금액을 표와 같이 명시.
 - 2) 조례 제5조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고 규정. 지원 대상 규정 방식이 위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바, 따라서 <입학준비금> 역시 <출산축하금>처럼 셋째만이 아니라 넷째/ 다섯째에게도 각각 지원하게 됨.

- 참고: 현행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시에서 “(구)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구는 중복 지원을 하고 있음.
- 그 결과, 2019년 기준 대구시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120만원(5만원씩 24개월), 셋째아 이상 360만원(20만원씩 18개월)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달서구 주민 경우, 출산 장려와 관련해 둘째아 140만, 셋째아 410만, 넷째아 610만, 다섯째아 이상 9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달서구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

- 1) 개정안에서 “육아용품”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라 규정(안 제2조제2호 및 제7호)하여 6세가 되기까지 그 부모는 연령에 맞춰 필요한 육아용품은 언제든(1회)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안 제8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만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여 조문 간에 혼선 우려 있음. 관련 조문의 수정 여부 검토 필요.
- 2)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 받는 <출산축하금>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육아용품>을 구매하도록 함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집행부가 기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에 추가로 20만원을 더하지 않고, 대신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현물로 굳이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
- 3) <출산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은 셋째아이부터(넷째, 다섯째 포함) 지원하지만, <육아용품>은 첫째아이에게만(둘째 이상은 제외) 지원하도록 대상자 선별 기준을 이처럼 달리 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

□ 금번 조례 개정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집행부의 금번 조례 개정 방식을 보면, 새로운 지원 항목 -<육아용품>-을 <신설>하면서 표에서 보듯이 최소 6곳 이상의 조(條) - 정의/지원내용/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대장비치/별지 3호·4호 신설 등-에 각 항(項)을 추가 (신설)하는 방식을 채택. 참고로 이런 방식의 조례 개정 사례 전국적으로 희소함.

-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향후 새로운 지원 항목 (예: <임신지원용품 : 달성군>·<첫돌축하금: 영덕군> 등)을 신설할 때마다, 또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 지원 내용을 달리하려 할 때마다 수개 조항(條項)을 동시에 개정해야 함. 이는 바람직한 조례 입안(개정) 방식이라 할 수 없음.

조문	현행 : 입학준비금 관련 규정	개정안 : 육아용품 관련 규정 <신설>
제2조 (정의)	3. “ <u>입학준비금</u> ”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7. “ <u>육아용품</u> ”이란 영유아의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지원내용)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u>입학준비금</u>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u>육아용품</u> 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u>입학준비금</u>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u>셋째 이상</u>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② <u>육아용품</u>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제6조 (지원기준 등)	<u>입학준비금</u> 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u>육아용품</u> 은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	<p>제7조(지원신청 등)</p> <p>① <u>입학준비금</u>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u>동장</u>(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구청장</u>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u>지정한 계좌</u>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9조(대장비치 등)</p> <p><u>동장</u>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육아용품 지원신청 등)</p> <p>① 육아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를 <u>구청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아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0조(대장비치 등) <u>동장</u>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대장을, <u>구청장</u>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환수 절차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u>입학준비금</u>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좌측 현행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육아용품의 부정 수급 시, 환수 관련 자구는 누락.

□ 참고 자료: 달서구 출산순위별 출생자 현황

【달서구, 출산순위별 출생자 현황 (2014년에서 2018년)】

구분(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5,025	5,049	4,504	3,706	3,041
1자녀	2,660	2,556	2,381	1,886	1,516
2자녀	1,903	2,035	1,736	1,458	1,242
3자녀 이상	454	455	381	342	223
미상	8	3	6	20	60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참고 자료: 집행부 제출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첫째자녀 출생 예상인원에 따른 육아용품 지원비용 추계

- 육아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로 지원

※ 2017~2019년 달서구 첫째아 출생아수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인원	1,886	1,516명	1,599	※자료원: 통계청

나. 추계의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 시행에 따른 5차년도까지 비용은 아래와 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근거: 2019년 첫째아 출생아수).

- 세출(첫째아 육아용품 지원비용): 금1,600,000천원(금일십육억원)정도
 - 육아용품지원비: $200,000\text{원} \times 1,600\text{명} \times 5\text{년} = 1,600,000\text{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100%(첫째자녀 육아용품 지원비용)